

교통안전 여건을 고려한 상권·공원 주변 이면도로의 시간대별 주차 허용 확대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정차·주차 금지 장소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등에 관한 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주차 시 정해진 장소·시간·방법 등에 따라야 하는 사항 ○ ○ 서울시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 및 관련 단속 기준
제안배경	○ 서울시는 야간관광·문화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영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의 경우 야간 이동 편의상 자가용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상권 및 공원 주변은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시민들이 야간 여가 및 지역 상권 이용 과정에서 주차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일부 상권·공원 주변 이면도로는 주간과 야간의 교통량·보행량 등 도로 이용 여건이 상이함에도, 시간대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탄력적인 주정차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까지 일률적인 주정차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야간 시간대 시민의 이동 및 주차 편의가 저하되고 상권 접근성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교통량·보행량·도로 폭·주변 시설 등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상권 및 공원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에 한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등 시간과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정차 관리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소통이라는 주정차 관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야간 시간대 시민의 주차·이동 편의를 높이고 상권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교통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규제사항	○ 상권·공원 주변 일부 이면도로의 경우 야간 시간대에도 주간과 동일한 주정차 관리가 적용되어, 해당 도로의 교통량·보행량 등 시간대별 이용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차 허용구역 운영이 제한적인 상황임. ○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라 정차·주차가 제한되는 구간 중에서도, 시간대에 따라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의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권·공원 주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야간 시간대의 주차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인 주정차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시간·공간적 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주정차 관리 심야 시간대에는 주간에 비해 교통량 및 보행량 등이 감소하는 등 도로 이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부 상권 및 공원 주변 이면도로에서는 이러한 시간대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정차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서도 시민의 야간 주차·이동 편의가 제한될 수 있음. ○ 야간 상권 및 공원 이용자의 주차·이동 편의 저하 야간 시간대 상권 및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의 경우 영유아·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동반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상황에서 자가

	용을 이용할 수 있으나, 주변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주차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시민의 야간 여가활동 및 지역 상권 이용에 불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별 교통환경을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관리 필요 동일한 주정차 관리 기준이라도 도로의 폭, 교통량, 보행량, 주변 시설 및 시간대 등에 따라 실제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모든 구간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선별하여 시간대별 주정차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 필요성 (해결방안): ○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을 활용한 상권·공원 주변 '심야 탄력주차 허용 구역' 지정 추진 ○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대별 주차 허용구역' 확대 검토 교통량·보행량·도로 폭·주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권·공원 주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특정 시간대에 한정된 주차 허용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예컨대 야간 교통량이 감소하는 구간에 대해 20:00~24:00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간대를 설정하고, 안전표지를 통해 허용구간·허용시간·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한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질서 유지 담보 ○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정비를 통한 야간 단속 기준의 합리적 조정 현행 점심시간대 단속 유예 제도의 운영 취지를 참고하여, 야간 상권 및
--	---

	여가 밀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심야 시간대(예: 20:00~24:00) 단속 유예 및 탄력 적용 가이드라인을 자치구 공통으로 마련·권고 기계적인 과태료 부과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자발적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시민 친화적 계도 중심 행정 병행 ○ 정책 정합성 제고를 통한 '안전과 야간경제 활성화'의 조화로운 달성 주차 여건 개선을 통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야간 체류 시간을 자연스럽게 연장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안전이 담보되는 합리적인 태두리 안에서 유연한 행정 운영을 실현함으로써, 서울시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활력 있는 체류형 야간 도시' 비전 달성에 기여
--	---